



권 두 칼 럼

어떤 사람이 ‘경찰관’ 이 되어야 하는가

이 상 안/행정학박사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공무담임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어 누구나 법적 자격요건만 갖추면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으로서 ‘경찰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시험성적이 우수하고 신체건강하며 사상·국가관 등을 보는 면접시험만 잘 치루면 법적요건을 갖춘 경찰관이 탄생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정작 ‘어떤 사람이 경찰관이 되어야 하는가’의 대명제 속에는 법적요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철학·사상·봉사가 내포된 규범적 윤리성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목표와 수단화 하여 경찰관 되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교육하여 이를 내면화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경찰관의 직무특성에서 요구하는 윤리성이다. 경찰관 직무의 특성은 긴급성, 루틴화 되지 않은 직무의 가변적 의사결정권, 지하·은닉된 장소에서의 이익거래성, 그리고 위험성·희생성이 주류를 이룬다. 이 때 직무처리의 정신자세와 가치관, 정직성과 공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윤리가 법의 생명원’이기 때문이다. 윤리가 토대되지 않고 윤리의 규범성을 벗어난 법적요건은 생명력을 상실한 채 ‘눈치와 형식성’만 생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찰의 직무에서 더 강조되는 이유는 경찰의 질서유지·범죄진압의 직무가 ‘질병의학’에서와 같은 수준의 ‘질서의학’적 전문성 윤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찰윤리의 차원과 수준은 경찰의 ‘자연관’과 ‘윤리관’에서 나온다. 경찰이 보는 인간과 자연질서와의 구조 동일성 관점, 사람과 사람과의 협력·상생의 관계에서 경찰의 윤리성 수준은 ‘세계화 경찰’의 관건이 되고 선진화 경찰의 초석이 된다.

그리고 경찰이 된 다음에는 열정과 동기의 ‘심정윤리’와 결과와 성과의 ‘책임윤리’가 동시에 확보될 때 ‘좋은 경찰’, ‘존경받는 신뢰경찰’이 된다. 윤리성 강한 경찰은 시민사회의 ‘義로운 지킴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조은순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행정연구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는 총 211,662건이 발생, 사망자는 6,166명, 부상자는 335,905명으로 2006년에 비해 각각 1% 내외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2007년 630,974명으로 2006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자는 362,198명으로 2006년도 340,316명보다 6% 증가하였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자는 268,776명으로 2006년도 228,798명보다 17% 증가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집행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적 문제점과 절차적 문제점을 파악, 향후 운전면허 행정처분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같이 살펴보면,

첫째, 교통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유인책이 미흡하다. 선량한 운전자들은 스스로 교통법규 준수함으로써 느끼는 이익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익보다 크다고 느낄 때 교통법규를 준수율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공고의 문제는 3가지로 살펴 볼 수 있다.

① 현재 경찰관서 게시판에 종이로 부착하여 실시하는 공고 절차는 효과면에서 대상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공고의 요건인 ‘소재불명’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행위가 적법성이 없는 결과에 이르는 문제가 있다.

② 경찰관서에서는 법원에서 공고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판결로 인하여 공고결정 행정처분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이나 취소 결격기간 중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된다가나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행위로 형사입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철회하여 주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

고 처분청이나 대상자에게 번거로움만 있을 뿐이다.

③ 반송대상자에 대하여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의 효력을 법원과 경찰관서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결정통지서가 반송되면 반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제2차 행정처분 결정통지서는 등기우편(일반규격 1,750원)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료(일반규격 1,500원)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7년도에 2차 결정통지서가 반송된 건수가 176,599건으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2억6천만원 상당이다.

셋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의 형평성 문제이다. 2007년도에 전체 운전면허 정지처분 건수 362,198건 중 77,528건(전체건수의 21%)의 정지처분 결정서가 반송되어 공고 후 정지처분을 하였다. 정지처분 결정자 21%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 되는 줄도 모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이 지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2차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지 기간 중 단속되면 무면허 운전해 담당하고, 2차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단속이 되어도 무면허 운전해 담당하지 않아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반사적 이익을 주고 있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통법규 준수 유인책으로 ① 사전 감경제도로 법규준수 포인트를 신설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1년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 누적시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자신이 누적시켜온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면허증 색을 구별하여 제작하는 방법이다.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할 때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면허증 색을 다른 위반자와 구별하여 제작하는 방법도 교통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번째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대상자 구분하여

강화하는 것이다.

① 누범자에 대한 처분강화로 1999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습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분이 폐지된 이후 초범 행정처분 대상자와 재범 행정처분 대상자는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교통법규를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이 준수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 보다 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 보험 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지처분 횟수가 4회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도로교통에 한시적으로 제외시켜 교통 위험원을 제거하고 대상자를 교화시킬 필요가 있다.

② 벌점 기준의 조정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29가지에 대하여 10점 부터 110점까지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벌점부과 기준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도로교통 유지를 위하여 위험도에 따라서 벌점이 정해져야 한다. 법규위반 내용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선 침범 행위로 교통사고가 매년 6%~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매년 10%~1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호위반 벌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교차로 통행 방법위반으로 매년 전체 교통사고의 7%~8% 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점은 현재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벌점 부과가 필요하다. 벌점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벌점기준을 재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번째로 통지로 갈음하는 공고절차 폐지이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공고절차는 정지처분의 단계만 더 늘릴 뿐 효과면에서 전혀 대상자나 경찰관서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공고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의 적법한 통지 사실 없이 면허증을 회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집행에 대해 어느 운전자도 용인하지 않고, 어느 법원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무면허에 대한 고의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가 7만명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주위 환경에 공고를 통지에 갈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로 인하여 무면허 운전자를 생산하게 되고, 무면

허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면 경찰관서에서는 무면허 운전자들이 고의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통지서가 반송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이 낭비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에서는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행정처분의 이유 등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통지를 해야만 행정처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공고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법원의 판결로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절차 후 정지처분을 하고 나중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나 교통사고 발생시에 행정처분을 철회하여 주고 있는 실정에서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라 개선되어 져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공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찾아야 한다. 공고와 동시에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이메일로 고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법규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통법규 준수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혜택을 주고, 위반자에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의 안전 확보는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벌과 비교 모든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시킬 수 있음으로 행정행위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뛰어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행정처분과 형사벌이 무서워서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닌 법규준수 동기유발에 근거한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반 예방적 효과도 높이고 행정처분의 정책 순응도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PSI**

■ 책임연구과제 논문요약

경찰관 직무만족도 평가모형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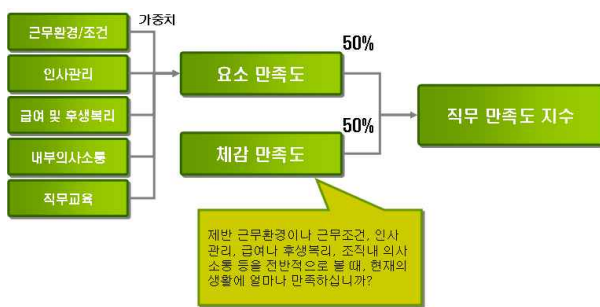
이 상 수 연구관/행정학박사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1. 현 평가모형 및 조사의 현황

경찰관 직무만족도 평가는 경찰관의 직무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직무만족도지표(Job Satisfaction Index)를 통해 수치화한 것으로 1999년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 2002년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각 1회를 합쳐 4회 실시되었으며, 2007년 9월 한 차례 실시되어 지금까지 여섯번 실시되었다.

조사개요는 본청 및 16개 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매년도 9~10월 중 약 2주간에 걸쳐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찰관의 인사, 복지, 교육, 근무체계 등 직무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경찰혁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근무조건, 인사관리, 급여 및 후생복지, 내부의사소통, 직무교육 등 5개 평가분야에 걸쳐 총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만족도 점수 산출 방식은 각 문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된 요소별 만족도 50%와 체감 만족도 50%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림 1> 경찰 직무만족도 산출모형



2. 현 평가모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행 경찰직무만족도 조사의 평가모형과 평가지표에 있어서 대체로 지적되는 문제점과 대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도 평가지표(세부평가항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말까지 여섯차례 조사된 직무만족도 지표가 조사 때마다 추가 보완되는 형식을 취하여 체계적인 지표체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년도 조사결과와 시

계열적 분석이 어려워 비교평가가 어려워 관련 대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가지표체계의 일관성을 확립하여 매년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평가분야와 평가지표(평가항목)의 체계적 정합성(systemic consistency)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직무만족을 평가하는 세부평가항목들이 경찰실무부서의 근무환경이나 인사·후생복지 등 가시적 현상에 대한 평가항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조직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 일할 맛 나는 소위 '훌륭한 일터(Great Workplace; GWP)로써 경찰업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만족은 구성원들의 과업수행을 증진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며, 직무 불만족은 과업수행의 몰입과 헌신을 저해하여 조직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일터의 환경 수준 및 상사와의 관계, 자신의 업무와 조직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동료간의 관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만족 평가모형의 틀과 평가항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에서 느끼는 정서적 욕구의 충족수준을 적절히 측정·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의 개선이 요망된다.

셋째, 조직몰입도나 조직시민행동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경찰 직무만족도 평가지표는 5개 분야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조직과의 일체감, 조직에 대한 긍정적 평가, 조직목표에 대한 신념, 수용, 충성 등과 같이 조직이 지향하는 이념과의 일치성을 일부 평가지표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속조직에 대한 애착, 조직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등 조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는 조직시민행동 평가지표도 일부 포함하여 조사한다면 치안정책 성과측정과 연계하여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가지표 및 설문문항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직무만족도 조사결과와 환류를 통한 각 부문별 정책수립

시 개선자료로써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매년 수행되는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는 경찰조직의 각 기능별부서별로 수행되는 업무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평가지표는 이와 관련한 구체성이 일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직무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제도 또는 시스템의 개선 등 하드웨어의 개선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평가제도 개선, 급여체계 조정 등 외형적은 요인의 해결 뿐만 아니라 일하는 관계, 일터의 심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공유가치와 조직문화적인 내적 요소 등의 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무만족도 평가항목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설문항목의 질문내용상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질문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 질문을 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정책활용도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설문항목이 개인의 직무만족도를 묻는 게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치안종합성과평가시 직무만족도 조사결과의 반영에 있어서 적지않은 불만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평가분야의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은 개인의 직무만족도 측정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치안종합성과평가에 반영할 직무만족도 평가지표 역시 지휘관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본청 차원의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지표점수는 배제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경찰 성과지표체계와 연계한 직무만족도 평가 지표의 재조정이 요청된다. 경찰조직 내 각 업무부서의 성과평가지표는 크게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성적 지표의 경우 직무만족도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성과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단, 이때 전년도 평가와 비교하여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평가지표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항목이 매년 동일하게 구성되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찰인력 구성에 있어 지속적으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일반직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만족도 조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 직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해 이들에 대한 직무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직무만족도지수 및 중요도 산출방법의 개선방향

현재의 경찰 직무만족도 평가모형의 직무만족도지수

산출방법과 중요도(importance) 산정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보다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가중치 산정에 대한 시비를 제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주관적 인지도를 측정하는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표본집단의 구성과 측정과정에서 다양한 오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이 조사결과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만족도 평가모형의 다양한 오류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보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바른 가중치 산정방법의 적용을 통한 평가분야별분야 내 세부 지표별 가중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직원만족도지수(Customer Satisfaction Index : CSI)는 평가대상분야(차원)들의 중요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평가분야의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만족도지수는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현재 경찰직무만족도 조사에서는 각 차원과 만족도간의 회귀분석(regression)으로 산출된 베타(β)값으로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베타(β)값은 각 차원들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출된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각 차원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와 각 평가분야별 만족도를 곱하여 각 평가분야별 가중만족도를 구하고, 구해진 변수들 간의 합을 직무만족도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중치 산정은 직무만족도 지수의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총합척도법(Constant Sum Method)이나 계층절차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dure)을 적용하여 정확한 가중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평가대상 5개 분야에만 베타(β)값을 적용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부터 각 평가분야별 세부 지표에 대한 가중치도 분야별 가중치 내에서 재산정하여 부여토록 한다.

4. 평가모형 및 지표체계의 개선방안

위의 요구를 반영하고, 새로운 직무만족도 평가 경향과 국내외 정부 및 기업조직의 직무만족도 평가지표체계에 대한 비교-검토를 토대로 평가지표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안에 대한 수정보완을 위해 '07년 6월말 국민의 요구(Voice Of Customer)에 대한 주기적 진단과 환류 체계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한 경찰혁신기

확단 소속 고객만족모니터센터 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경찰 직무만족도 평가지표체계를 기존 5개 분야에서 인사·성과관리, 내부의사소통, 조직몰입, 조직문화, 직무환경, 교육, 복리·후생 등 7개 분야로 확대하고 총40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평가모델 개발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각 평가분야별 세부평가지표를 보다 세분화구체화하여 평가의 적확성(的確性)을 제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인사관리 분야는 ‘인사관리 및 성과관리 분야’로 개칭하고 성과평가 문항을 대폭 반영하였다. 이는 인사관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준을 측정하는 만족도 평가지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조사결과의 정책적 환류를 제고시키고자 한 것이다.

둘째, 내부의사소통 분야는 상사의 직무수행 지원도와 직원의견의 반영도, 조직내 의사전달 만족도 등의 질문을 새롭게 추가하고, 응답자 입장에서 기존 질문문항을 보다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셋째, 직무교육 분야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업무수행 도움정도, 그리고 교육참여기회 제공정도를 추가 신설하였다. 각 교육훈련기관별로 조사할 경우, 각 질문문항 하단에 보조질문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경찰조직 내 팀워크 리더십 수준, 그리고 경찰관의 조직몰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몰입분야를 신설하고, 조직문화 분야의 지표체계와 질문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한편, 새롭게 개발된 직무만족도 평가모형(안)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모니터센터에서 '08. 7. 15~7.20에 걸쳐, 경기청·경북청 소속 경찰관 중 무작위 표본추출한 7,000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1,046명이 유효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시범조사의 주요내용은 직무만족도 평가모형(안)의 측정지표·설문의 구성 및 내용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각 측정분야·문항별 가중치 등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조사결과는 SPSS를 활용, 신뢰성 및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지표체계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의 Cronbach 알파의 값이 0.8 이상으로 평가문항의 신뢰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 모형의 건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아울러 측정산식에 있어 기존 '07년 조사까지 분야(요소)만족도(50%)와 체감만족도(50%)의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단 하나의 설문문항이 전체체감만족도지수에 50%나 과대반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체체감만족도를 삭제하고 7개 평가분야별 만족도 전체 합산점수를 100%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확정하였다.

단,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방법은 지표 수의 과다 등의 문제로 최종적으로 순위선정(Priority Ranking)방법을 통해 각 평가분야와 지표의 중요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PSI**

<표 1> 경찰관 직무만족도 평가모형 개선사항

분야	직무만족요인
인사·성과관리	인사고과 평정의 공정성
	승진심사의 공정성 등
	인력배치 적정성
	업무분장의 적정성
	성과평가의 공정성
	성과급과 포상의 적정성
내부 의사소통	상사의 직무수행 지원정도
	상사 및 동료간 의사소통의 원활성
	타 부서간 협조 용이성
	업무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업무처리절차의 합리성
	직원의 의사결정 반영도
	내부 정보 공유 정도
소속기관의 일체감 정도	
조직몰입	동료직원간 신뢰도 및 소속감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 성실도
	업무수행의 성취감 정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
조직문화	관서장(해당기관장)에 대한 신뢰도
	관서장(해당기관장)의 조직비전·전략 실천의지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정도
직무환경	업무혁신에 대한 수용도
	경찰장비에 대한 만족도
	사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업무수행시 자유재량 정도
교육	직무를 통한 자기계발 가능성 정도
	교육 참여기회 제공 정도
	직무수행 도움 정도
	소양 및 자기계발 도움 정도
후생복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정도
	업무 대비 보수의 적정성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
	복리후생 시설·제도 운영의 다양성
	복리후생 시설·제도 등의 접근 용이성
복리후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	

■ 영역연구과제 논문요약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김 상 겸/경제학 박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집 회나 시위의 과격·폭력화 양상은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불법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은 국가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시위 당사자들의 비용, 이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비용, 나아가 시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국민들에게도 심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불법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추정하여, 이의 심각성을 사회구성원 간에 공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불법폭력시위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관심과 추정의 필요성도 매우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집회·시위는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전까지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추세적 감소의 구조 속에, 감소와 증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양태를 살펴보면, 80~90년대 민주화 운동단계까지는 매우 과격했으나, 민주화가 진척된 이후 외양적으로는 평화적 시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위의 이슈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의사표출로 변화되어가면서 점차 과격화·폭력화 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시위 건수나 시위 인원, 동원 경찰수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위 관련 경찰부상자수는 오히려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이다.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시위가 가장 적었던 2002년 이후 경찰부상자의 발생 건수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상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시위의 양상이 보다 폭력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2년 이후 시위회수와 경찰부상자 수가 증가추세를 나타낸 원인은, 각종 이익집단의 시위 양상이 폭력적으로 변화한 데 반해, 경찰의 대응은 인권준중 등의 정책적 이유로 제한되었기 때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근래의 정책기조가 인권신장에 보다 무게를 둬으로써,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TA관련 시위나 미군기지 이전관련 시위 등에서 볼 수 있다시피, 최근의 공권력 경시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근래 나타나고 있는 폭력화 현상은 공권력 대응의 약화가 매우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와 같이 폭력적 시위가 증가하는 또 다른 측면의 이유는 이익집단이 의사를 표출함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시위를, 그 내용상으로는 과격성을 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과격시위를 해야만 사회적 주목을 받고, 이를 통해 정부의 관심과 협상과 정상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과격시위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였고, 이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근래에도 과격시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회·시위의 경향에 따라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집회·시위의 사회적 비용을 몇가지 분석단계를 거쳐 추정하였는 바, 그 추정된 비용은 합법과 불법시위를 망라하여 총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합법시위의 사회적 비용 총액은 약4천 100억원, 불법·폭력시위가 발생시킨 사회적 비용은 평균 5조5천억원 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폭력시위의 사회적 비용은 일반국민의 피해비용에 대한 가정, 즉 불쾌감만 느꼈을 경우, 간접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따라 낮게는 4조5천억원 가량에서 최고 20조원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 한 해 동안 집회·시위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은 약 6조원(5조9천2백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GDP) 847조 8,764억원의 0.7%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국민피해비용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한 것이며, 최대치를 적용하는 경우 GDP의 2.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분석기법상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누락된 비용항목들의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추정결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피해비용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적정 추정기법의 미비나 정형화의 어려움 등으로 비용추정에서 제외된 항목들, 예컨대 인적·물적피해비용, 소송비용, 국가신인도 하락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진정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토대로 평가할 때,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집회·시위의 사회적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시위경향이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집단의 이익,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회·시위의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특정집단에게만 돌아가는 반면, 그 비용은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문제(외부비용의 미반영)를 발생시키며, 이는 소득재분배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순기능보다

는 역기능이 더욱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집회·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지적해 주고 있다.

우선, 추정결과에 따르면 합법시위의 사회적 비용은 1회당 4천만원 미만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총 합법시위회수 10,306회를 고려해도 4,119억 가량의 사회적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불법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이 890억 가량, 1년간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총합이 5조5천억원 가량임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전체 집회·시위 가운데 합법시위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집회·시위의 양상이 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라도 이를 유도할 필요는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살펴본다면 법과 원칙의 정립을 통한 시민의식의 고양 등을 꼽을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계도를 통한 바람직한 시위문화의 정착, 준법정신의 제고, 시민의식의 고양 등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PSI**

★ 사은품을 드립니다 ★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 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 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인터넷: webmaster@psi.go.kr
- 내부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권태형

□ 보내실 내용

- 이름, 연락처
-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응역연구과제 논문요약**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 연구

이 민 식/행정학 박사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CPTED는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범죄예방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CPTED 프로그램의 정책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고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며, 이후 추진될 수 있는 유사 프로젝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특히 전-후 시범지역들 간 그리고 비교지역들 간 (평균)차이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식범죄통계: 부천시는 서울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위험도가 높으며,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다. CPTED 프로그램을 전후하여 집계된 공식통계에서 부천중부경찰서 및 남부경찰서 관할구역 전체의 범죄통계도 그러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관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들의 경우는 관내 전체 지역에 비해 범죄의 증가가 적거나(중부경찰서의 경우) 감소하는(남부경찰서의 경우) 양상을 보임으로써 CCTV를 포함한 CPTED 프로그램의 범죄저감 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범죄피해: 공식통계는 범죄암수에 매우 취약하다. 범죄피해조사 자료 또한 범죄암수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 무게는 덜하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총량을 파악함에 있어서 공식통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범죄유형 모두의 피해율이 사후조사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비교지역의 피해율도 시범지역의 경우보다는 덜하지만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CPTED의 범죄에

방 효과가 인접한 지역에게까지 전파되는, 소위 효과의 확산(diffusion)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공식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의 확산이 소위 전이효과(displacement)라는 희생을 대가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

(3) 범죄신고: CPTED의 한 가지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은 그것이 주민들의 지역범죄예방 활동 참여와 범죄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본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후 시범지역에서는 침입강도의 경우를 제외한 전 범죄유형에서 신고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비교지역에서는 다소간 상반되게 신고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4)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범죄의 심각성 인식이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근린환경의 무질서에 대한 평가: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물리적 무질서의 지각이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범죄피해의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두려움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두려움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미세하게나마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인근의 불안한 장소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으나, 비교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다. **거주지 인근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경험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감소하였으나, 비교지역은 증가하였다. **종합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과 범죄유형별 특정적 두려움 등 모두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범죄의 두려움이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 CPTED 기법에 대한 태도 및 인식: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선호도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범죄예방효과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CCTV의 사생활침해 염려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CCTV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염려가 감소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오히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의 경우**, 시범지역은 전후조사에서 보안등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평가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비해, 비교지역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수 정비 선호도의 경우**,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조경수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웃 간 유대: 시범지역은 사후조사에서 이웃 간 유대가 약간 증가하였는데 반해, 비교지역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지역 범죄예방활동 참여의사: 두 지역 모두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서 지난 1년간 실시·운영되고 있는 CPTED 프로그램이 범죄발생, 범죄피해와 신고, 지역 주민들의 범죄 및 CPTED에 대한 인식·지각에 미친 영향은 본 논문에서 검토된 거의 전 분야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후조사를 통해, 비교지역에서는 시범지역과 달리 약간 부정적인 인식과 효과가 나타난 것은 흔히 상황적 범죄예방이 갖는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전이현상’(displacement)이 일정 부분 실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PSI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인 : 김인규 기획운영과장, 유동열 연구관
편집위원 : 이상수, 김운영, 이동규, 권태형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285-2616
- 경비: 61-5207
- e-mail: webmaster@psi.go.kr

치안정책연구 제22호 원고 공모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도에 발간 예정인 「치안정책연구(제22호)」에 수록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심사 후 선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1. 기 간 : 2008년 9월 1일 ~ 2008년 10월 15일
2. 분 량 : 200자 원고지 100-120매(논문, 영문 초록 각 200자 원고 4매 내외)
3. 제출분야 : 투고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치안정책, 범죄수사, 치안행정, 생활안정, 사회안정, 교통, 안보대책 등 경찰과 관련된 분야
4. 투고자격 : 국내외 대학전임교수, 연구소 연구원, 대학원생 및 경찰실무 경력자
5. 제출방법 : 원고파일과 투고신청서를 E-mail로 전송하거나 디스켓(CD)으로 제출
6. 제출양식 : 연구소에서 지정한 양식으로 제출(홈페이지 참조)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E-mail : ycmt7@hanmail.net , yim0183@naver.com
- 문 의 : 편집실 (김운영 연구관, 경비 61-5305, 일반 031-283-8735)
운영계 (경비 61-5023, 일반 031-285-0183, Fax : 031-285-0184)

■ 해외 치안연구동향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개관

경정 이 기 수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한 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수립 이후 15년여의 기간 동안 경제무역규모는 대폭 성장했고, 현재 이미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무역과 경제협력의 동반자가 되어 있다. 또한 보다 폭넓은 경제교류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이처럼 확대되는 경제교역 규모에 따라 양국이 모두 상대국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절실하다. 실제 양국의 교역에 있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제도의 차이나 상호간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가장 강력한 법률수단이자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저자가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저자가 연구를 진행한 논문 “지적재산권 형사보호의 한·중 비교연구” 중 핵심부분인 양국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형법은 1979년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로 위조상표죄를 규정했다. 이후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제3장 7절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규정하였는데, 213조 내지 220조에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범죄를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지적재산권 관련 형사보호 규정을 제정하면서 경제성장에 발맞춰 법률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현황은 2005년을 기준으로 볼 때 모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범죄가 이 시기에 전년 대비 소

폭 증가 내지 감소한데 비하면 큰 차이점으로 보여진다. 이는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규정이 제정되는 초기에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제도가 한국과 기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은 7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은 한국과 달리 불법소득 몰수, 침권복제품 소각, 재료·설비 몰수 등의 권한까지 보유한 행정기관의 막강한 행정권한을 이용한 행정보호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형법에만 지적재산권 침해범죄를 집중적으로 규정한 ‘집중형’ 입법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에 비해 한국은 각 지적재산권 개별법에 형벌규정을 분산 규정한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형벌 내용에 있어 중국은 자유형 위주에 벌금형을 보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은 벌금형을 위주로 하여 몰수규정을 두는 형태이다. 또한 법인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한국은 개인과 법인의 처벌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런 차이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이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침해의 지적재산권 범죄에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모두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범죄성립에 있어 그 정상(情狀)의 경중을 불문하나, 중국은 ‘정상(情狀)이 엄중’하거나, ‘불법소득액이 크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섯째, 법원과 수사기관 간의 관할문제에 있어 한국은 권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함에 제약이 없음에 비해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사회질서나 공공이익을 심각하게 해하거나 특별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수리할 수 없고, 공간기관이 직접 나서 수사토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중국형법이 범죄행위로 규정한 죄명의 범위가 한국보다 훨씬 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한국에서 범죄로 규정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중국에서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위 일곱째 차이점과 관련하여 중국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영업비밀과 관련한 형사보호 규정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것을 들 수 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한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중국형법은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점,

(2)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사칭죄만을 규정하고 특허권 침해범죄는 규정하지 않은 점,

(3) 저작권 침해행위에 중국은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만 범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 태양에 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다양하고 가능한 침해행위를 규정하지 않은 점,

(4)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있어 한국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데 비해 중국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모두 범죄로 보고, 과실범에 대해 고의범의 처벌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규정된 점 등 역시 개별 규정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한국이 지적재산권 법규를 먼저 제정하고, 시대발전과 기술진보 등에 따른 새로운 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대응에 온데 비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보다 짧은 기간에 자국의 지적재산권 법제를 정비하여왔으며, 한국과는 다른 입법 환경을 법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차이점은 곧 중국 법규의 개선점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근 10년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지적재산권 관련 형법규정을 경제상황과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법규는 그에 대한 모범적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자격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률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대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살아있는 지적재산권 법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간의 법률을 비교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법률은 선진국의 법률을 그대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가져다 적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현실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법규를 대하는 태도로서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법률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일 것이다. 혹자는 자국의 법률보다 선진적이지 못한 타국의 법률을 보고 못마땅해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해당국가에 체류하면서조차 그 법률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타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데도 방해가 될 뿐이다.

더구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고, 2008년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게 중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국가가 되어 있고, 정치, 군사, 문화방면에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국가다. 향후 100년간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자는 주저 없이 중국을 꼽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법규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중국법제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중국법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중 양국의 교류확대와 관련 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은 연구의 작은 출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PSI](#)

경찰관련 국내 박사학위논문 목록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논문 중 키워드가 ‘경찰’ 인 논문을 저자명 가나다 순으로 정렬

2005년도

No.	제 목	저 자	학 교
1	한국 경찰개혁의 과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구종태	영남대학교
2	警察上 武器使用의 限界와 權利救濟에 관한 研究	金基載	한국의국어대학교
3	警察의 知識管理시스템에 關한 研究	金盛東	건국대학교
4	警察情報活動의 法的 根據와 限界에 관한 研究	金聖勳	동아대학교
5	韓國의 國家警察과 自治警察의 機能配分에 관한 研究	金在鍾	경기대학교
6	警察署의 效率性 分析에 관한 研究	김대중	관동대학교
7	韓國 海洋警察 機能의 再定立에 관한 研究	金現	전남대학교
8	일선경찰의 시민지향성에 관한 연구 : 47개 경찰서와 4개 지구대에 있어 지역·조직·개인요인의 영향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박경래	서울대학교
9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朴創奭	한양대학교
10	地方自治警察制에 대한 認識과 導入方向	朴熙芳	충북대학교
11	巡察地區隊 運用에 관한 研究	石淸鎬	동국대학교
12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방안	송상욱	용인대학교
13	테러對應을 위한 國家間 警察協力體制의 強化方案에 관한 研究	吳泰坤	조선대학교
14	韓國의 自治警察制 模型에 關한 研究	尹英煥	강원대학교
15	不法駐車 規制政策에 관한 研究	윤형관	동국대학교
16	韓國의 테러에 대한 認識과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李大成	동국대학교
17	警察公務員의 行政指導行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關한 研究 : 計劃行態理論 (TPB)의 適用을 中心으로	李東洙	조선대학교
18	정권교체에 따른 경찰제도 변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이선엽	단국대학교
19	警察法上의 概括授權條項에 관한 研究	李運周	서울대학교
20	犯罪少年에 對한 量刑의 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李昌韓	동국대학교
21	朝鮮時代 侍衛制度 變遷에 관한 研究	李忠洙	동국대학교
22	遺傳子를 利用한 犯罪搜查에 關한 研究	장전배	동국대학교
23	경찰공무원의 역할갈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정상완	청주대학교
24	警察組織內 葛藤管理方式이 組織有效性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鄭世宗	동국대학교
25	女性犯罪者의 社會內處遇에 관한 研究	趙允梧	동국대학교

2006년도

No.	제 목	저 자	학 교
1	韓國警察의 腐敗行爲와 腐敗防止方案에 관한 研究 : 犯罪經濟學的 接近	姜吉星	동아대학교
2	警察法上 危險防止에 관한 研究	具亨瑾	조선대학교
3	家庭暴力의 實態와 警察의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 아내暴力을 中心으로	金水律	호남대학교
4	警察 組織葛藤이 組織有效性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金正奎	원광대학교
5	경찰행정의 서비스품질과 고객충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훈	경기대학교
6	警察權行使에 있어서 基本權保障에 關한 研究	金鍾世	한양대학교
7	자치경찰의 신규임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수	계명대학교

No.	제 목	저 자	학 교
8	下位文化要因과 學校暴力과의 關係에 關한 研究 : Cohen과 Miller의 下位文化理論을 中心으로	金鍾旼	동국대학교
9	경찰공무원의 스포츠활동이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	김학운	중앙대학교
10	飲酒運轉規制政策과 그 改善方案	朴起範	계명대학교
11	韓國型 自治警察制度의 導入 方案에 關한 研究	朴億鍾	세종대학교
12	韓國 公警護 制度史 研究	朴張圭	전주대학교
13	警察活動에 대한 住民의 信賴度에 關한 研究	申成植	동국대학교
14	警察서비스에 대한 市民滿足度 研究	李秉宗	동국대학교
15	警察의 組織文化가 職務滿足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研究	李聖揆	동국대학교
16	自治警察制度에 關한 比較法的 研究 : 警察委員會 制度를 中心으로	李閔永	영남대학교
17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모형정립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종철	경남대학교
18	경찰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 이론과 역사적 사례	진용찬	서울대학교
19	지역특성과 경찰활동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승민	계명대학교
20	警察業務의 適正化에 關한 研究 : 警察의 他機關 業務協助를 中心으로	趙鏞喆	동국대학교
21	警察豫算의 變化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關한 研究	咸友植	동국대학교

2007년도

No.	제 목	저 자	학 교
1	자치경찰의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강영규	동국대학교
2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곽영길	동국대학교
3	警察法上 標準權限規範의 體系에 關한 法理 : 바이에른 州 警察職務法을 中心으로	權培根	한양대학교
4	氣象要素와 交通死亡事故의 關係에 關한 研究	金光源	관동대학교
5	警察清廉도와 組織有效性과의 關係에 關한 研究	金龍根	원광대학교
6	強姦犯罪의 被害者化 要因에 關한 研究 : 加害者 調査를 통한 被害者化 理論의 統合的 檢證	南在星	동국대학교
7	警察에 대한 國民의 이미지 形成에 關한 研究	민형동	동국대학교
8	犯罪豫防網(CPN) 構築의 制度化와 警察調整者모델에 關한 研究	朴幸烈	충남대학교
9	수사경찰의 전문성과 직무효과성에 관한 연구	박형식	광운대학교
10	治安環境認識과犯罪 두려움의關係研究 : 서울地域을 中心으로	成容銀	동국대학교
11	警察公務員의 日常的·職業的 經驗이 스트레스 水準에 미치는 影響	申盛元	원광대학교
12	地方自治警察制 施行에 따른 治安 서비스 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 住民과 公務員의 認識을 中心으로	沈基宦	건국대학교
13	大韓帝國 후기 (1905-1910) 警察制度 研究	梁洪準	고려대학교
14	警察公務員의 組織沒入 決定要因에 關한 研究	柳泳賢	동국대학교
15	犯罪被害者에 대한 警察의 保護方案 研究	林丙洛	조선대학교
16	사회적 교환이론을 통한 경찰공무원의 안전행동에 관한 연구	임운식	계명대학교
17	警察公務員 疲勞 水準의 影響要因에 關한 研究	丁愚一	동국대학교
18	경찰서 조사업무공간의 뉴오피스 모형 연구	趙賢美	홍익대학교
19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정성 인식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재진	동국대학교
20	犯罪에 대한 두려움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關한 研究 : 女性을 中心으로	車薰眞	동국대학교
21	형사사법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최환석	대불대학교
22	警察의 交通指導團束에 關한 研究	黃成采	동국대학교

치안논총 제24집 배포

2008년 7월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논총 제 24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번 치안논총에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김상겸 단국대 교수), ‘경죄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손동권 건국대 교수), ‘환경설계를 통한 방법프로그램(CPTED)의 효과분석연구’(이민식 경기대 교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치안정책연구」 학진 등재 T/F 발족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치안정책연구」를 명실상부한 학술지로 공인받기 위해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T/F를 발족시켰다. T/F는 기획지원팀, 편집심사팀, 외부협력팀으로 구성되어 학술지 등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8년 경찰청 단기연구과제 수행

경찰청에서는 치안정책연구소에 2008년 단기연구과제 9건을 하달하였다.

No.	연구과제명	담당 연구관
1	경미 저작권침해행위 비범죄화 및 비친고죄화 방안	이상수
2	독일 수사권 조정 논의의 역사	정지운
3	이륜자동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권태형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이 음주운전 근절에 미치는 효과 분석	조은순
5	경찰장비 사용 관련 판례 해석을 중심으로 한 사용 기준 연구	김학신
6	선진 외국사례 비교를 통한 「지역치안역치안협의회」 발전 방안 연구	임현규
7	정보경찰의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유지웅
8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이동규
9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보안수사 대응방안	유동열

용역·위촉연구과제 중간발표회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8월, 4회에 걸쳐 전 연구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 용역·위촉연구과제 중간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일자	연구과제명	발표자
8.4	노사 분규시 외국의 공권력 투입 기준에 관한 연구	이영남
8.11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분석	차성민 강신원
8.18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한 표준지표연구	탁종연
8.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서정범

◆ 조용관 연구부장은 「통일을 준비하는 정치교육」(한국학술정보)이란 저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정치교육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치교육의 개념과 기능, 남북한 정치교육, 통일대비정치교육의 과제, 통일을 위한 준비 등을 기술하고 있다.

◆ 유동열 연구관(안보대책연구실)은 2008년 8월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전장병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위해세력의 실체’에 대해 특강을 하였다. 강의 후 유연구관은 수방사령관으로 부터 안보교육 감사패를 증정받았다.

◆ 인사발령(전입): 2008년 7월 28일자로 경찰대학 운영지원과 임현규 경감이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경찰연구관으로 발령받아 부임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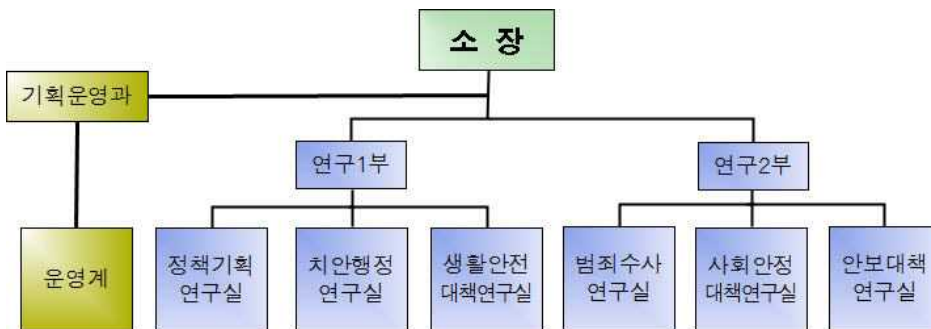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서	담당 업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치안정책개발 및 기획에 관한 연구 총무행정 및 제도개선 등 치안행정 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의 보수·후생 등 복지관련 사항 연구
치안행정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경찰 정보통신의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 경찰의 대국민 홍보방안 연구 경찰교통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 관련 범죄연구 경찰 외근업무,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대책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사회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정보활동 및 국내사회안전대책연구 경찰경비활동 및 대테러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분석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보안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치안정책 관련 연구수요 조사◆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위 연구분야와 관련된 연구수요를 연중 접수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다립니다. 치안행정에 관한 이론 정립 및 다양하고 심도있는 치안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를 희망하는 주제를 자유로이 선정, 연구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또는 E-mail(webmaster@psi.go.kr)을 이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